

# ‘평화적 혁명’으로서의 3·1운동

폭력성의 조건과 비폭력·불복종

---

윤해동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한국근대사 전공

geobookz@gmail.com

---

- I. 머리말
  - II. 시위의 폭력성과 발포
  - III. 비폭력 시위의 조건
  - IV. 폭력적 시위와 비폭력·불복종
  - V. 맺음말
-

## I. 머리말

---

3·1운동이 비폭력 시위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 운동’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학계에서 지금까지 커다란 이견이 없었다. <3·1독립선언서>의 말미에 첨부한 ‘공약 3장’에는,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다. 비폭력 시위가 중심이 되는 3·1운동의 전개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또 이처럼 ‘질서를 존중하는 비폭력 시위’는 ‘자유적 정신(自由的精神)’에서 출발해야 하며 결코 ‘배타적 감정(排他的感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3·1운동이 오로지 평화적인 시위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고, 또 폭력성과 관련된 운동의 성격을 둘러싸고 그 동안 논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3·1운동에서 드러난 폭력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북한과 일본의 학계를 포함하여 한국사학계에서 해방 이후 오랫동안 다양한 논의가 단속적으로나마 이어져 왔다.<sup>2</sup>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3·1운동 연구의 중심을 이룬 문제의식은 주로 구체적인 지역사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되어 있었다.<sup>3</sup> 강한 폭력성이 동반된 주요 시위사건이 사례분석의 대상이 되었

---

\* 날카롭고 성실한 비판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1 「3·1독립선언서」(1919. 3. 1),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samil).
- 2 3·1운동의 폭력성과 관련한 거시적인 연구사에 대해서는 윤해동,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I: ‘폭력성’에 대한 거시적 접근」, 『사학연구』 113호(2019), 503-545쪽 참조.
- 3 3·1운동의 지역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성과를 참조할 것.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국학자료원, 2009); 김정인 외, 『국내 3·1운동 1』(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진호 외, 『국내 3·1운동 2』(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국사연구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경인문화사, 2019).

고, 폭력성이 강한 시위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체 시위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시위의 흐름을 묘사하거나, 각종 시위의 다양하고 미시적인 측면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략 37% 전후의 시위사건이 폭력을 동반한 시위였다는 점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sup>4</sup> 이른바 '민족대표'의 비폭력노선과 달리 상당한 수준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3·1운동이 '폭력투쟁'으로서의 가치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sup>5</sup> 그렇다면 약 4월에 가까운 시위가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3·1운동은 과연 평화적 운동이 아니라, 상당한 폭력시위를 동반한 '폭력투쟁'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은 '평화적 혁명(peaceful revolu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밝혀내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평화적 혁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올해 1천 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세금을 내서 주 정부로 하여금 폭력을 휘두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처사는 아닐 것이다. 만일 평화적인 혁명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평화적인 혁명일 것이다."<sup>6</sup> 국민이 충성을 거부하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내놓을 때 혁명은 완수된다고, 소로우는 덧붙인다. 그는 만약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자신의

---

4 윤해동(2019), 앞의 논문 참조.

5 대표적으로 김영범, 「3·1운동에서의 폭력과 그 함의」,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4호(2018), 67-104쪽 참조.

6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레, 1999), 33-43쪽.

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sup>7</sup> 그는 비폭력, 무저항·불복종의 실천을 평화적 혁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적 혁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과 비폭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어 비폭력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복종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히 스케치해두려 한다. 물론 이는 3·1운동의 시위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폭력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비판 연구학계에서는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로 규정하고, 폭력이 만연한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폭력을 철학적으로 혹은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폭력이 국가권력이나 어떤 이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폭력을 신화적 폭력(법 정초적 폭력과 법 유지적 폭력)과 신적 폭력으로 분류하여 근대 폭력연구에 많은 시사와 영감을 주었다. 이런 폭력의 정의방식은 식민지민의 외로운 저항에 동반하는 폭력의 행사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반면 유명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의 관련에 의문을 표시하고, 권력의 정당성이 폭력에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중지시키려 노력하였다. 권력이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쉬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8</sup> 마찬가지로 반권력적이고 저항적인 폭력이라도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권력에 의해 곧바로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개념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는

7 헨리 데이빗 소로우(1999), 위의 책, 33-34쪽.

8 김정환, 「폭력과 저항」, 『사회와 철학』 21집(2011), 363-390쪽; 이문영,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역사비평』 106호(2014), 323-356쪽; 김선옥, 「한나 아렌트의 폭력개념」, 『인문학연구』 14호(2008), 7-29쪽; 김선옥, 「폭력과 평화」, 『동서사상』 15집(2013), 71-82쪽 참조.

것이 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다. 인도에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주도한 간디에게 비폭력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이었다. 비폭력은 인간 본성의 진리와 일치하는 법칙이며, 평화·정의·질서·자유·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선천적인 욕망과 일치하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비폭력이 사회적 행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sup>9</sup>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역시, 비폭력은 인간의 도덕적인 요청에 의해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10</sup> 간디와 킹에게 비폭력은 인간의 존재 조건을 규정하는 도덕적 원칙이 되는 셈이다.

이런 비폭력 개념 위에 무저항·불복종 개념이 구축된다. 간디에게 무저항은 사회의 선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절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내적 힘이 된다. 수동적인 힘만으로 비폭력·불복종운동은 불가능하다. 킹은 민중의 불복종 선언이 그들의 분노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도덕적이며, 창조적인 힘은 바로 비폭력·불복종운동에서 나오는 것이 된다. 비폭력·불복종은 그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1</sup>

한편 3·1운동이 당시 운동에 참가한 당사자들에 의해서 혁명으로 해석된 사례는 많지 않다. 물론 3·1운동 전후 시기 혹은 해방될 때까지 일부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혁명에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sup>12</sup> 독립운동의 진행 과정에

9 모한다스 K. 간디 저, 황필호 편역, 「비폭력은 강자의 무기이다」, 『비폭력이란 무엇인가』(종로서적, 1986), 75-120쪽.

10 마틴 루터 킹 저, 황필호 편역(1986),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위의 글, 7-72쪽.

11 모한다스 K. 간디 저, 황필호 편역(1986), 위의 글; 마틴 루터 킹 저, 황필호 편역(1986), 위의 글.

12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돌베개, 2019), 253-278쪽.

서 해외 독립운동 단체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계열에서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혁명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경 임시정부는 1941년 광복군 창건 과정에서 3·1운동이 혁명임을 내세운 바 있으며,<sup>13</sup> 이를 「건국강령」에서 명시하였고,<sup>14</sup> 1944년 5차 개정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에도 이를 반영하였다.<sup>15</sup> 또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역시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의 부흥재생적 운동임을 강조하였다.<sup>16</sup> 또 해방 후 3·1운동을 둘러싼 정통성 경쟁의 와중에서 혁명적 사건으로 높이 평가되기도 하였다.<sup>17</sup> 하지만 엄밀한 개념 정의 아래서 3·1운동이 혁명으로 정의되고 사용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을 ‘혁명’으로 이해하고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개념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sup>18</sup> 이와 관련하여 특히 헌법학 연구자들의 논의가 눈에 띄는데, 이들은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sup>19</sup> 이

13 조성환, 「창간사」, 『光復』 제1권 제1기, 1941. 2.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14 「建國綱領」(1941. 11),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15 「大韓民國臨時憲章」(1944. 4. 22),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16 「釋三一革命精神」, 『大公報』(1943. 3); 『나라사랑』 21집(1975), 146-150쪽.

17 「三一革命記念 가지가지」, 《동아일보》, 1947년 2월 27일자. 3·1혁명 개념은 1947년 3·1운동 기념행사를 위하여 한국학생동맹이 사용한 것이다.

18 이준식, 「‘운동’인가 ‘혁명’인가: ‘3·1혁명’의 재인식」, 『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2014), 42-56쪽; 김삼웅, 『3·1혁명과 임시정부』(두레, 2019). 기념의 의미를 강조하는 논의에서도 혁명 개념은 대개 전제되고 있을 뿐, 분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19 김수용,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헌법학연구』 제25권 1호(2019), 67-93쪽; 정상우, 「3·1운동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학연구』 제25권 1호(2019), 1-33쪽; 김광재,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의 헌법사적 재해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9권 1호(2019), 81-118쪽.

논의들은 대개 1919년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 규정과 1948년 민주공화국 수립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를 3·1운동의 혁명성에서 확인하려 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안된 헌법 초안에는 '3·1혁명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맥락이 구성되어 있었음을 강조한다.<sup>20</sup> 이들은 헌법학의 입장에 서서 3·1운동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제국의 신민에서 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3·1운동의 전개과정 자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 동아시아 차원에서 3·1운동의 혁명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주체의 형성, 군주제와의 급격한 단절과 공화정의 추구 그리고 새로운 문명전환에 대한 인식 등의 측면에 비추어볼 때, 3·1운동은 혁명의 조건을 충족하는 커다란 변혁이었다는 주장이다.<sup>21</sup> 3·1운동을 혁명으로 이해하는 논의는 이제 출발선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기서는 3·1운동을 비폭력운동 그리고 무저항·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 혁명으로 3·1운동을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발포가 자행된 시위를 대상으로, 시위의 폭력성 문제와 발포의 상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이른바 '연속시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비폭력 시위의 조건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20 김수용(2019), 앞의 논문 참조.

21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와 3·1운동: 계속 학습되는 혁명」, 『창작과비평』 183호(2019), 51-56쪽; 백영서, 「역동하는 동아시아의 1919: 혁명의 기점으로서의 3·1운동과 5·4운동」, 『개념과 소통』 23호(2019), 5-37쪽; 「좌담 3·1운동 100주년이 말하는 것들」,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창비, 2019), 11-76쪽.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주로 연속시위를 대상으로 폭력·비폭력 시위와 불복종의 조건에 대해 따져보려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평화적 혁명으로서의 3·1운동이라는 규정이 설득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 II. 시위의 폭력성과 발포

저자는 3·1운동의 폭력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로 발포와 시위의 폭력성이 갖는 상관성을 중심으로 시위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sup>22</sup> 이를 통해 일제 군경의 발포가 자행된 시위 가운데 약 85% 가까운 시위가 폭력성을 띠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발포와 폭력성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분석 과정에서 사용한 폭력 개념은 '가벼운 폭력'과 '무거운 폭력'이라는 두 가지 단계 개념이었다. 가벼운 폭력은 집단항의와 폭행의 두 가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무거운 폭력은 파괴, 처단, 방화 등의 행위를 포함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발포와 가벼운 폭력이 대응하는 정도가 무거운 폭력과 발포의 대응 비율보다 높았다. 필자는 바로 여기 곧 무거운 폭력과 발포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에 시위의 폭력성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sup>23</sup> 발포가 있었던 날 가벼운 폭력이 많았던 이유를 확인하면, 발포와 폭력 시위의 상관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위사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다. 2019년 3월 25일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3·1운동 데이터베이스>

22 윤해동(2019), 앞의 논문 참조.

23 윤해동(2019), 위의 논문.

에서 확인되는 시위 건수는 1,545건이다. 이는 해외에서 일어난 시위와 1919년 4월 23일 이후의 시위를 제외한 것이다.<sup>24</sup>

이제 이전 분석의 연장선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폭력성 대 발포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려 한다. 시위의 폭력성과 발포의 상황을 도별로 나타낸

표1-폭력성 대 발포의 도별 상황

도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소계	5유형	6유형	소계	합계
강원도	2	5	0	2	14	10	1	11	25
경기도	27	19	0	14	60	28	34	62	122
경상남도	11	4	1	8	24	12	8	20	44
경상북도	2	11	0	6	19	1	10	11	30
전라남도	1	0	0	1	2	1	0	1	3
전라북도	2	0	0	0	2	2	2	4	6
충청남도	10	7	0	7	24	4	2	6	30
충청북도	7	6	0	0	13	10	9	19	32
평안남도	6	7	0	1	14	6	5	11	25
평안북도	22	6	0	5	33	13	6	19	52
함경남도	8	3	0	0	11	12	1	13	24
함경북도	3	1	0	0	4	3	1	4	8
황해도	19	3	0	4	26	16	3	19	45
합계	125	72	1	48	246	118	82	200	446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1) 각 유형의 내용

1유형: 발포와 가벼운 폭력

2유형: 발포와 가벼운 폭력 및 무거운 폭력

3유형: 발포와 무거운 폭력

4유형: 발포와 비폭력시위

5유형: 발포 없는 가벼운 폭력

6유형: 발포 없는 무거운 폭력

2) 이 표에 집계된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1,100여건의 시위는 비폭력시위였고 발포도 없었다.

24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해동(2019), 앞의 논문 참조. 국편의 <3·1운동 데이터베이스>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이 논문의 데이터 입수시점인 2019년 3월 25일의 자료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지만, 이를 여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되풀이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인 데다가, 추가된 자료가 전체적인 해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자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주기를 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미리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위의 표를 통해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자.

이 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4유형 시위 곧 발포가 있었음에도 비폭력시위로 종결되었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유형은 일제 군경의 발포가 있었음에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위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48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발포 사례의 19.5%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개 확인되는 데이터 사정만으로는 폭력과 발포의 우선 순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4유형의 경우를 통해 보건대, 발포를 하였음에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사례가 약 2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압하는 폭력의 힘에 압도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음 그림1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발포가 최고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 곧 3월 27일부터 4월 9일 사이의 시기에 발포가 있었음에도 비폭력 시위로 일관한 사례가 많았던 것은, 잔인한 방식의 진압에 의해 시위가 압살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역으로 이는 나머지 198건 즉 79.5%의 사례에서는 발포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이는 발포와 폭력시위의 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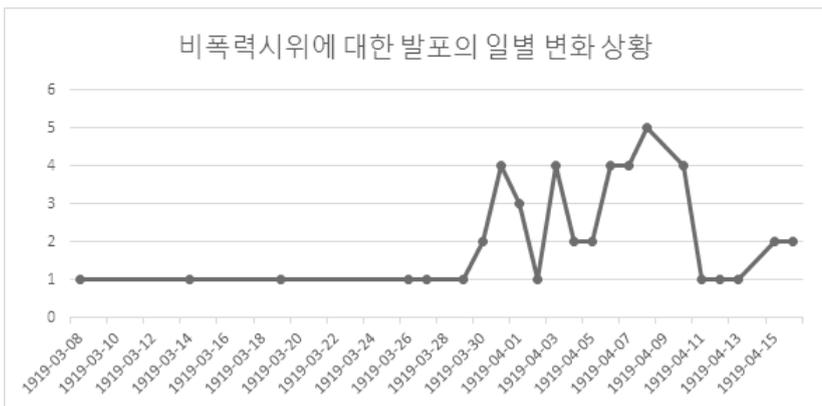


그림1-비폭력시위에 대한 발포의 일별 변화상황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응변하고 있는 것이리라. 셋째, 1유형의 사례를 통해 진압하는 측의 발포에 대해 무거운 폭력보다 가벼운 폭력으로 대응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이 또 확인된다. 넷째, 무거운 폭력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거운 폭력으로 대응한 경우 즉 3유형은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시위에서는 가벼운 폭력이 무거운 폭력으로 발전해갔다는 사실(2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발포와 폭력적 시위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포가 없었음에도 폭력이 동반된 시위가 있었던 경우 즉 5, 6유형의 사례가 모두 200건에 해당한다. 이는 발포와 함께 폭력 시위가 발생한 경우 즉 1, 2, 3유형의 합계 198건과 거의 대등한 건수를 보인다. 이 역시 매우 논쟁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폭력시위가 발포가 없었던 날의 시위에서도 비슷한 건수를 보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발포를 비롯한 잔인한 진압방식이 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답변을 시도해보려 한다.

### Ⅲ. 비폭력 시위의 조건

폭력 시위 혹은 비폭력 시위가 발생한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서는 ‘연속시위’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운동 시위 중에는 하루 이상 1주일 전후의 시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혹은 단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폭력이 행사되는 방법 혹은 발포가 자행되는 상황 등은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황적으로 따라서 우연적으로 결정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표를 통해 각 도별로 연속시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표2-연속시위 장소의 도별 상황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강원도	22	12	5	2	2	-	-	43
경기도	66	48	26	13	4	2	4*	165*
경상남도	44	25	8	1	1	2	-	81
경상북도	38	15	9	4	1	-	-	67
전라남도	16	5	2	1	-	-	-	24
전라북도	21	7	3	-	-	-	-	31
충청남도	44	20	7	2	-	-	-	73
충청북도	33	12	6	2	-	-	-	53
평안남도	30	14	11	1	1	1	-	58
평안북도	32	12	10	5	3	3	1	66
함경남도	35	11	6	-	1	-	-	53
함경북도	15	7	5	2	1	-	-	30
황해도	46	33	9	5	-	1	1	95
합계	442	221	107	38	14	9	8*	839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표의 숫자는 시위 발생 장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장소는 면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지역의 경우 부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다.

\* 경기지역의 경우 8일간 연속으로 시위가 진행된 지역(장단군 장단면)과 14일간 진행된 지역(경성부)이 있다. 그러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며, 합계에는 이 수가 포함되어 있다.

\*\* 연속시위의 일수는, 날짜가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며칠 동안의 간격을 두고 나중에 시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즉 단속적인 시위의 일수도 포함하였다.

위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속시위의 일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틀 동안 이어진 경우이며, 다음으로 사흘 동안 시위가 벌어진 사례도 매우 많다. 양자를 합치면 338곳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틀 혹은 사흘 동안에 연속시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위 발생의 연속성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심지어 일주일 이상 시위가 이어진 곳이 8곳, 그 가운데 경성부를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시골 면에서 장기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연속시위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자면, 시위가 하루 만에 그친 데가 442곳인데 비해, 계속적으로 혹은 단속적으로 시위가 이어진 데가 397곳이다. 전체 시위가 일어난 장소 가운데 47% 정도에서 연속시위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각 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전체 시위 중 연속시위가 일어난 장소의 수와 비율

구분	도별 시위장소 전체	연속시위 장소	연속시위 장소 비율	비고
강원도	43	21	48.8	
경기도	165	99	60.0	
경상남도	81	37	45.6	
경상북도	67	29	43.2	최고
전라남도	24	8	33.3	최저
전라북도	31	10	32.2	
충청남도	73	29	39.7	
충청북도	53	20	37.7	
평안남도	58	28	48.2	
평안북도	66	34	51.5	
함경남도	53	18	33.9	
함경북도	30	15	50.0	
황해도	95	49	51.5	
합계	839	397	47.3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각 도별 상황을 보면 전체 시위 가운데 연속시위가 일어난 장소의 비율이 낮은 곳은 24%부터 높은 곳은 67%에 걸쳐 있지만, 전체적으로 47%를 차지하여 약 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단발성의 1회 시위와 여러 날에 걸친 연속시위가 대체로 1 대 1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시위 건수 가운데

연속시위가 차지하는 건수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연속시위가 일어난 장소가 전체의 약 반 정도에 해당하므로, 연속시위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음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4-도별 연속시위 건수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강원도	22	24	15	8	10	-	-	79
경기도	66	96	78	52	20	12	50*	374
경상남도	44	50	24	4	5	12	-	139
경상북도	38	30	27	16	5	-	-	116
전라남도	16	10	6	4	-	-	-	36
전라북도	21	14	9	-	-	-	-	44
충청남도	44	40	21	8	-	-	-	113
충청북도	33	24	18	8	-	-	-	83
평안남도	30	28	33	4	5	6	-	106
평안북도	32	24	30	20	15	18	7	146
함경남도	35	22	18	-	5	-	-	80
함경북도	15	14	15	8	5	-	-	57
황해도	46	66	27	20	-	6	7	172
합계	442	442	321	152	70	54	64	1,545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표의 숫자는 시위 건수를 나타낸다. 건수는 장소별 시위 건수를 모두 더한 것이다.

\* 경기지역의 경우 8일간 연속으로 시위가 진행된 지역(장단군 장단면)과 14일간 진행된 지역(경성부)의 시위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연속시위가 일어난 장소의 시위 건수를 날짜별로 모두 계산하면, 연속시위의 장소보다 훨씬 많은 시위 건수가 연속시위의 그것으로 나타난다. 시위의 전체 건수가 1,545건이고 그 가운데 연속시위가 차지하는 시위 건수가 1,103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약 47% 정도의 장소에서 연속시위가 발생한 데 비해, 시위 건수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5-전체 시위 중 연속시위 건수의 비율

구분	도별 시위 건수 전체	연속시위 건수	연속시위 건수 비율	비고
강원도	79	57	72	
경기도	374	308	82	최고
경상남도	139	95	68	
경상북도	116	78	67	
전라남도	36	20	56	
전라북도	44	23	52	최저
충청남도	113	69	61	
충청북도	83	50	60	
평안남도	106	76	72	
평안북도	146	114	78	
함경남도	80	45	56	
함경북도	57	42	74	
황해도	172	126	73	
합계	1,545	1,103	7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모든 도에서 연속시위 건수가 도별 시위 전체의 5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7할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도 등 6곳이다. 연속 시위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는 대체로 격렬한 시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한다.<sup>25</sup>

25 윤해동(2019), 앞의 논문 참조.

표6-도별 연속시위의 폭력성과 발포상황

구분	연속 시위 비율	연속 시위 건수 비율	가벼운 폭력			무거운 폭력			발포		
			1회 시위	연속 시위	비율(%)	1회 시위	연속 시위	비율(%)	1회 시위	연속 시위	비율(%)
강원도	49	72	9	13	59	1	5	83	6	8	57
경기도	60	82	16	78	83	9	45	83	13	44	77
경상남도	46	68	8	22	73	5	9	64	6	15	71
경상북도	67	67	7	11	61	7	11	18	4	13	76
전라남도	24	56	-	1	100	-	-	-	1	1	50
전라북도	31	52	4	2	33	-	2	100	2	-	-
충청남도	40	61	9	13	59	3	5	62	7	16	70
충청북도	38	60	12	17	59	2	12	86	6	7	54
평안남도	48	72	3	17	85	2	10	83	2	11	85
평안북도	52	78	4	36	90	3	9	90	4	28	88
함경남도	34	56	11	13	54	2	2	50	5	6	55
함경북도	50	74	3	4	57	1	-	-	2	2	50
황해도	52	73	10	30	75	3	3	50	6	18	75
합계	47	71	96	257	73	38	113	75	64	169	73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1회 시위'는 1회로 종결된 시위를 지칭하고, 연속시위는 2회 이상 시위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비율은 전체 건수에서 연속시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위 표는 도별로 연속시위가 발생한 장소의 비율과 이곳에서 폭력적 시위 및 발포가 일어난 비율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속시위의 장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인데 비해, 이곳에서 가벼운 폭력은 73% 그리고 무거운 폭력은 75%를 나타내고 있다. 연속시위가 일어난 곳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의 비율은 대체로 연속시위의 건수 비율 71%에 근접한다. 게다가 발포가 일어난 비율도 73%여서 폭력의 발생과 발포의 비율이 거의 비등한 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속시위가 일어난 경우에 과격하고 잔인한 진압이 행해지고, 또 그에 대응하여 폭력을 동반하는 시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연속시위에 대한 진압의 폭력성은 전체 발포 가운데서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음 표를 살펴보자.

표7-도별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 상황

구분	전체 발포 수	1회시위		연속시위	
		1회시위 수	발포	연속시위 수	발포
강원도	14	22	6	21	8
경기도	57	66	13	99	44
경상남도	21	44	6	37	15
경상북도	17	38	4	29	13
전라남도	2	16	1	8	1
전라북도	2	21	2	10	0
충청남도	23	44	7	29	16
충청북도	13	33	6	20	7
평안남도	13	30	2	28	11
평안북도	32	32	4	34	28
함경남도	11	35	5	18	6
함경북도	4	15	2	15	2
황해도	24	46	6	49	18
합계	233	442	64(14.4%)	397	169(42.5%)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1) '1회 시위'는 1회로 종결된 시위를 지칭하고, 연속시위는 2회 이상 시위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는 연속시위 과정에서 발포된 것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1회시위 442건에 대한 발포가 64건 즉 전체의 14%였던 데 비해, 연속시위의 경우 전체 397건에 대한 발포가 169건으로 4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1회시위에 대한 발포는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때 발포는 주로 유력한 예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위의 첫째 날에 발포가 자행될 경우,

다음날까지 시위가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비폭력 시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일제의 군경은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발포를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 연속시위에 대해 이런 잔인한 진압이 다수 자행되었다는 것은, 무저항·불복종의 원칙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시위가 많이 전개되었고 일제 군경은 이에 대해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거론한 필자의 논문에서 남겨놓은 과제 즉 무거운 폭력과 발포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에 시위의 폭력성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대해 답할 때가 되었다. 아래 그림2에서는 연속시위와 연속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발포 및 무거운 폭력의 상관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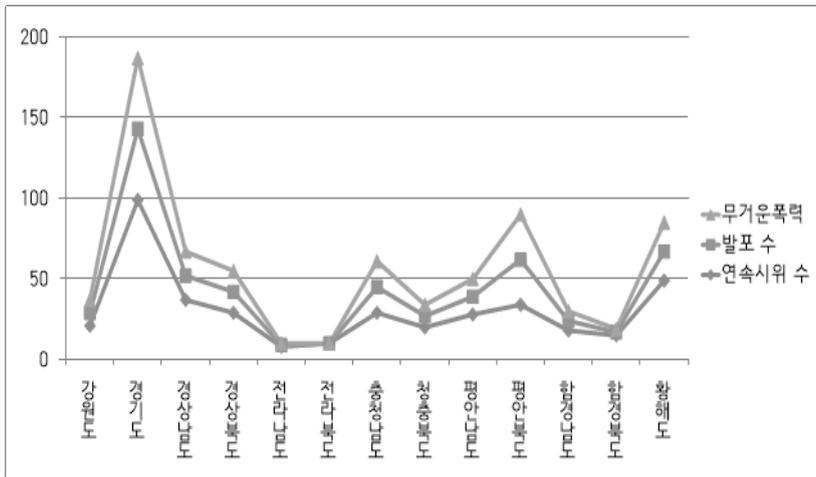


그림2-연속시위, 발포, 무거운 폭력의 상관성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지난 논문에서는 발포가 있었던 날에 대응하는 무거운 폭력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벼운 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연속시위를 대상으로 발포와 무거운 폭력의 수를 집계한 결과는 달랐다. 연속시위 과정에서는 발포와 무거운 폭력이 날짜별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26</sup> 위 그림2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속시위의 수보다 발포의 수가 많고 발포의 수보다 무거운 폭력의 수가 많다. 이는 연속시위 과정에서 발포가 중복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과 발포 전후에 무거운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거운 폭력이 발포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연속시위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발포와 무거운 폭력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 장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연속시위는 1회시위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빈발하고 있었으며, 시위 건수로는 더욱 많아 7할을 상회하는 수를 기록하고 있다. 연속시위는 1회시위에 비해 폭력성과 발포의 비율도 높았다. 물론 이런 사실이 전체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연속시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성과 발포의 상황을 더욱 미시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시위의 전체적 면모와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연속시위를 살펴보는 작업이 비폭력시위를 세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26 IV장의 표10과 표12 참조. 이 두 개의 표는 발포와 시위의 전개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발포일과 폭력시위가 일어난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 IV. 폭력적 시위와 비폭력·불복종

이제 연속시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3·1운동이 비폭력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실증해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지금부터 첫째 연속시위 1일 차의 비폭력 시위 상황, 둘째 발포가 있었던 연속시위, 셋째 발포가 없었던 즉 비폭력의 연속시위를 차례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연속시위 1일 차의 비폭력시위 상황인데, 먼저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연속시위의 첫째 날에는 대부분의 시위가 비폭력 시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각도별 통계를 통해 살펴보자.

표8-연속시위의 1일 차 폭력·비폭력 상황

구분	연속시위 장소	1일 차 비폭력시위	1일 차 폭력시위	발포
강원도	21	16(76.1)	5	2
경기도	99	72(72.7)	27	7
경상남도	37	26(70.2)	11	3
경상북도	29	23(79.3)	6	4
전라남도	8	8(100)	0	0
전라북도	10	9(90.0)	1	0
충청남도	29	25(86.2)	4	5
충청북도	20	12(60.0)	8	2
평안남도	28	22(78.5)	6	5
평안북도	34	30(88.2)	4	1
함경남도	18	14(77.8)	4	2
함경북도	15	13(86.7)	2	0
황해도	49	41(83.6)	8	5
합계	397	312(78.6)	85	36(42.3)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표 속 ( ) 안의 숫자는 각각의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연속시위를 대상으로 첫째 날의 폭력성 문제를 살펴본 위 표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연속시위의 첫째 날에 비폭력 시위로 일관한 사례가 약 79%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확인 가능한 경우, 거의 모든 시위는 비폭력시위로 출발하였다. 물론 시위의 폭력성과 발포의 선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지만,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대부분의 연속시위가 비폭력시위로 출발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폭력적 시위를 목표로 내걸고 시위를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한 사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표 가운데 폭력 관련 시위와 발포 관련 통계가 드러내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첫째 날부터 폭력시위가 전개된 경우에, 그 가운데 다수의 사례 36건 곧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시위에서 발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 반에 근접하는 사례의 경우에 발포를 동반하는 강경한 진압이 이루어짐으로써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역시 출발부터 시위가 폭력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폭력으로 일관한 312개의 연속시위에 36개의 발포 사례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348개의 시위사례가 비폭력 시위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연속시위의 약 8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분석대상인 발포가 있었던 연속시위 사례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차례가 되었다. 다음 표에서는 연속시위의 마지막 날에 발포가 있었던 사례와 첫째 날 혹은 그 이후 중복적으로 발포가 있었던 사례로 나누어 각 도별로 정리해보았다.

표9-연속시위에 대한 발포의 두 유형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합계*
강원도	2(1)**	4	6
경기도	26(1)	11	37
경상남도	8(1)	4	12
경상북도	4(1)	6	10
전라남도	-	1	1
전라북도	-	-	-
충청남도	7	6	13
충청북도	4(1)	2	6
평안남도	4	5	9
평안북도	11(3)	8	19
함경남도	4(1)	2	6
함경북도	2	-	2
황해도	7(1)	7	14
합계	79(10)	56	135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 합계의 숫자는 앞의 표7-도별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 상황의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표의 수는 하나의 연속시위에 대한 중복된 발포의 수를 모든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제1유형 중 ( ) 안의 숫자는 약간의 변형된 유형을 표시한다. 곧 발포 이전에 폭력시위가 있었거나, 발포가 연속적으로 있었던 사례를 가리킨다.

위 표에서 제1유형은 연속시위의 마지막 날에 발포가 있었던 사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2유형은 첫째 날 혹은 그 이후에 중복적으로 발포가 있었던 사례를 의미한다. 또 제1유형에는 약간의 변형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날 발포가 있기 전에 폭력시위가 있었거나 발포가 중복적으로 있었던 사례를 가리킨다. 제1유형이 57%, 제2유형이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속시위의 다수는 비폭력시위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발포로 시위를 마감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제2유형은 제1유형보다 좀 더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2유형의 56사례에 대하여 발포와 시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보았다.

표10-연속시위 제2유형의 발포와 시위 상황

구분	장소	시위 지속일수	발포일*	시위 상황**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5일	1일 차	2,4,5일 비폭력시위 1,3일 가벼운폭력
	이천군 이천면	5일	3일 차	1,2,3,5일 비폭력시위 4일 가벼운폭력
	홍천군 내촌면	3일	1일 차, 2일 차	3일 비폭력시위 1,2일 가벼운폭력
	횡성군 횡성면	3일	2일 차	1일 비폭력시위 2일 무거운폭력 3일 가벼운폭력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3일	1일 차	1,2,3일 비폭력시위
	광주군 경안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무거운폭력
	김포군 양촌면	3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3일 가벼운폭력
	용인군 외사면	2일	1일 차	1,2일 가벼운폭력
	수원군 성호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무거운폭력
	수원군 장안면	5일	3일 차, 5일 차	1,2,4,5일 비폭력시위 3일 무거운폭력
	수원군 향남면	4일	1일 차, 4일 차	2,3,4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안성군 이죽면	2일	1일 차, 2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무거운폭력
	양주군 주내면	2일	1일 차	1,2일 비폭력시위
	양평군 양동면	2일	1일 차, 2일 차	1,2일 비폭력시위
	파주군 광탄면	3일	2일 차	1,3일 가벼운폭력 2일 무거운폭력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면	2일	1일 차, 2일 차	1,2일 비폭력시위
	양산군 양산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합천군 가야면	2일	1일 차	3일 비폭력시위 1,2일 가벼운폭력
	합천군 합천면	3일	2일 차	3일 비폭력시위 1,2일 가벼운폭력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2일	1일 차, 2일 차	1,2일 비폭력시위
	안동군 임동면	2일	1일 차	1,2일 무거운폭력

	안동군 임하면	3일	1일 차, 3일 차	3일 비폭력시위 1,2일 무거운폭력
	청도군 운문면	2일	1일 차, 2일 차	1,2일 가벼운 폭력
전라남도	제주군 신좌면	4일	3일 차	1,2,4일 비폭력시위 3일 가벼운폭력
전라북도	-	-	-	-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무거운폭력
	서산군 정미면	2일	1일 차, 2일 차	1일 무거운폭력 2일 가벼운폭력
	천안군 입장면	3일	3일 차	1,3일 비폭력시위 2일 무거운폭력
	청양군 운곡면	2일	1일 차	1,2일 비폭력시위
	청양군 정산면	3일	1일 차, 3일 차	2,3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홍성군 장곡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무거운폭력
충청북도	옥천군 이내면	2일	1일 차	1,2일 무거운폭력
	진천군 만송면	2일	1일 차, 2일 차	1일 무거운폭력 2일 가벼운폭력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3일	1일 차	2,3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강서군 함종면	3일	1일 차, 2일 차	2,3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성천군 성천면	3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3일 가벼운폭력
	양덕군 양덕면	2일	1일 차	1일 무거운폭력 2일 가벼운폭력
	평양부	6일	1일 차	2,3,4,5,6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평안북도	구성군 구성면	2일	1일 차, 2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삭주군 삭주면	6일	4일 차, 5일 차	1,2,3일 비폭력시위 4,5,6일 가벼운폭력
	의주군 가산면	6일	3일 차, 4일 차, 5일 차	1,2,3일 비폭력시위 4,5,6일 가벼운폭력
	의주군 수진면	4일	3일 차, 4일 차	1일 비폭력시위 2일 가벼운폭력 3,4일 무거운폭력

	의주군 의주면	7일	6일 차	1,2,3,5,7일 비폭력시위 4,6일 가벼운폭력
	창성군 동창면	3일	2일 차	1,3일 비폭력시위 2일 가벼운폭력
	창성군 창성면	5일	2일 차, 4일 차, 5일 차	1,3일 비폭력시위 2,4,5일 가벼운폭력
	초산군 초산면	4일	3일 차	1,2일 비폭력시위 3,4일 가벼운폭력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정평군 춘류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함경북도	-	-	-	-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신천군 신천면	4일	2일 차, 4일 차	1,3일 비폭력시위 2,4일 가벼운폭력
	안악군 안악면	6일	4일 차	1,5,6일 비폭력시위 2,3,4일 가벼운폭력
	재령군 북률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재령군 재령면	4일	1일 차, 4일 차	2,3,4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평산군 인산면	2일	1일 차, 2일 차	1일 비폭력시위 2일 가벼운폭력
	해주군 가좌면	2일	1일 차	2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합계	56곳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1)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각주 24)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9년 3월 25일에 입수한 것이다. 2020년 2월 현재의 시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보면, 이 글에서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시위가 확인된다. 게다가 시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는 자료도 더 많이 입력되어 있다. 따라서 시위 건수와 시위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변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예전의 자료에 입각하여 논지를 전개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거시적인 지평에서 볼 때 해석의 변화를 야기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심심한 양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2) \* 발포일의 날짜는 발포가 있었던 날짜의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 시위상황에서 '가벼운폭력'과 '무거운폭력'은 각각 가벼운 폭력과 무거운 폭력을 동반한 시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의 내용을 표시한 이 표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연속시위가 이어지는 경우 발포가 거듭 자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56곳 사례 가운데, 2회 이상 발포가 있었던 곳은 21군데이다. 심지어 평북 의주군 가산면이나 창성군 창성면의 경우에는 모두 3일에 걸쳐 발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시위가 시작하는 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발포가 행해진 곳도 많았다. 안성군 이죽면 등 전체적으로 9군데에서 연속적으로 발포가 자행되었다. 셋째, 발포가 있었음에도 많은 시위가 대체로 비폭력시위로 전개되고 있었다. 시위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폭력시위가 없었던 사례, 다시 말하면 폭력시위만 이어진 곳은 모두 9곳에 지나지 않는다. 제2유형 전체 56곳의 사례 가운데 9곳이라면 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비폭력시위가 있었던 연속시위에서 폭력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무거운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요컨대 연속시위 제2유형의 경우 역시, 발포가 집중적이고 중복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우에 비폭력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속시위에 대해 발포가 있었던 경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세 번째 분석대상인 연속시위 가운데 발포가 없었던 사례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려 한다. 아래 표는 연속시위가 비폭력시위로 이어졌던 사례와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전개된 사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11-발포가 없었던 연속시위의 두 유형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합계
강원도	12	2	14
경기도	34	25	59
경상남도	13	9	22
경상북도	19	1	20
전라남도	7	0	7
전라북도	8	1	9
충청남도	16	1	17
충청북도	8	5	13
평안남도	13	1	18
평안북도	9	5	14
함경남도	7	5	12
함경북도	11	2	13
황해도	24	7	31
합계	181(73%)	68(27%)	249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제1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으로 일관한 시위, 제2유형은 약간의 폭력적 시위가 동반된 연속시위를 가리킨다.

제1유형을 통하여 발포가 없었던 연속시위의 경우 7할을 상회하는 경우에 비폭력시위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력적 시위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폭력'을 동반한 시위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전체 68건의 제2유형 가운데 '무거운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발생한 사례는 29곳에 지나지 않는다. 제2유형 시위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은 주로 가벼운 폭력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발포가 없었던 연속시위 전체에서 무거운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전개된 곳의 비율은 약 12%에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무거운 폭력은 주로 검거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거나 시위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태'에 의해 발생한 것이 많았다.

요컨대 발포가 없었던 연속시위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화적인 비폭력 시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폭력이 동반된 시위라고 하더라도 폭력성은

주로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폭력시위가 발포가 있었던 날과 없었던 날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라는 제II장의 말미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발포 없는 1회시위와 연속시위에서의 폭력은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둘째, 특히 앞의 연속시위 제2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속시위 과정에서는 발포가 없는 날이어도 상당히 많은 수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거리 시위가 갖는 본연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진압하는 측의 폭력이 시위하는 사람들의 폭력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연속시위 가운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도 많았다. 여기서는 시위가 6일 이상 지속된 17곳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12-6일 이상 지속된 연속시위의 내용

구분	장소	시위 지속일수	발포 여부	시위 상황
경기도	개성군 동면	6일	무	6일 모두 비폭력시위
	개성군 송도면	7일	무	2,5,6일째 비폭력시위 3,7일 가벼운폭력 1,4일 무거운폭력
	개성군 중면	7일	무	7일 모두 비폭력시위
	고양군 송인면	7일	무	1,3,4,6,7일 비폭력시위 2,5일 무거운폭력
	수원군 수원면	6일	무	1,2,3,4,6일 비폭력시위 5일 무거운폭력
	안성군 읍내면	7일	무	1,2,6일 비폭력시위 5일 가벼운폭력 3,4일 무거운폭력
	장단군 장도면	8일	무	1,2,3,4,5,6,8일 비폭력시위 7일 무거운폭력
	경성부	14일(21건)	무	2,3,4,5,6,7,8,9,11일

				비폭력시위 1, 10, 12, 13, 14일 무거운폭력
경상남도	마산부	6일	무	6일 모두 비폭력시위
	진주군 진주면	6일	무	4,5일 비폭력시위 1,2,3,6일 가벼운폭력
평안남도	평양부*	6일	1일째 발포	2,3,4,5,6일 비폭력시위 1일 가벼운폭력
평안북도	삭주군 삭주면*	6일	4,5일째 발포	1,2,3일 비폭력시위 4,5,6일 가벼운폭력
	삭주군 외남면	6일	무	6일 모두 비폭력시위
	의주군 가산면*	6일	3,4,5일째 발포	1,2,3일 비폭력시위 4,5,6일 가벼운폭력
	의주군 의주면	7일	무	2,3,5,7일 비폭력시위 1,4,6일 가벼운폭력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6일	4일째 발포	1,5,6일 비폭력시위 2,3,4일 가벼운폭력
	해주군 해주면	7일	무	1,2,3,4,6일 비폭력시위 5,7일 가벼운폭력
합계	17곳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비고: \*는 '연속시위 제2유형'과 중복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6일 이상 시위가 지속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리한 이 표가 말해주는 주는 사실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6일 이상 시위가 계속된 연속시위의 사례는 모두 17곳에 달한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8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안북도가 4개 지역으로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와 평안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위가 다발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경성과 평양 및 마산의 도시지역 세 곳을 제외하면, 모두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성이나 개성 등 대도시 주변의 도시화된 지역 혹은 군의 읍내지역 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연속시위가 일어난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17곳 가운데 발포가 있었던 지역은 4군데이다. 이 가운데 평양을 제외하면 모두 상대적으로 도시와 거리가 먼 주변화된 지역이었다. 다시 말하면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연속시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일제 군경 역시 발포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3·1운동 과정에서의 시위 유형을 도시형=평화형, 농촌형=공세형으로 도식화해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sup>27</sup>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연속시위의 경우, 농촌지역보다 일제 군경의 발포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다. 넷째, 6일 혹은 7일 동안 진행된 연속시위 기간이 모두 비폭력시위로 채워진 지역이 4곳이다. 그리고 폭력적 시위가 동반된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비폭력시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장기 연속시위가 일어난 지역을 통해 3·1운동 시위과정의 몇 가지 중요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폭력시위가 3·1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폭력시위가 동반된 지역에서도 비폭력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시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혹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읍치지역처럼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에서 장기 연속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발포가 상대적으로 쉽게 자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폭력적 시위를 통해 3·1운동이 가진 불복중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연속시위의 과정 속에는 비폭력시위 그리고 발포와 이에 대한 폭력시위가 분산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속시위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바, 여기서는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

27 배성준,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박헌호·류준필 엮음, 『1919년 3월 1일에 묻다』(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진행하였다. 첫째, 연속시위 1일 차의 비폭력 시위 상황, 둘째, 발포가 있었던 연속시위, 셋째, 발포가 없었던 비폭력의 연속시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결과는 대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연속시위 1일 차의 8할 정도는 비폭력시위였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시위의 경우에도 비폭력 시위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연속시위는 비폭력시위로 출발했던 것이다. 둘째, 연속시위에 대한 발포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1유형은 마지막날 발포가 있었던 경우이고 제2유형은 첫째날 혹은 그 이후에 중복적으로 발포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1유형이 제2유형보다 많았는데, 제1유형은 거의 대부분 발포 이전까지는 비폭력시위로 진행되고 있었다. 제2유형의 경우 중복적으로 발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응하여 폭력적 시위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시위를 이끌고 나간 것은 비폭력시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발포가 없었던 연속시위 역시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제1유형은 끝까지 비폭력시위를 유지한 경우이고, 제2유형은 약간의 폭력성이 동반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인 비폭력시위가 중심을 이루었고, 폭력시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연속시위의 분석 대상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비폭력시위가 운동의 중심이었음을 확인해주는 주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대상의 경우에도, 제1유형은 거의 모두가 비폭력시위였고, 제2유형의 경우에도

---

28 계획적이고 공세적인 폭력시위의 사례로 거론되는 경우, 대부분은 연속시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김영범(2018), 앞의 글 참조. 따라서 연속시위 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시위의 폭력성 정도만을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깊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연속시위와 발포 그리고 폭력성의 연관 문제는 추후 3·1운동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비폭력시위가 시위를 끌고 가는 동력이었다. 이처럼 3·1운동을 끌고 가는 근본적인 힘은 비폭력시위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심각하게 자행된 발포와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폭력적 시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3·1운동은 본질적으로 비폭력·불복종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서 불복종에 관한 간디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간디는 불복종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가슴 속에 폭력이 있을 때는 우리의 무능을 감추기 위하여 비폭력의 옷자락을 걸치기보다는 차라리 폭력적이 것이 더욱 좋다. 무기력함보다는 언제나 폭력을 선택해야 한다(Violence is any day preferable to impotence). 폭력적인 사람은 비폭력적으로 될 희망이 있다. 그러나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다.”<sup>29</sup> 간디는 특히 비폭력운동과 자기방어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비폭력적인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을 때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sup>30</sup>

간디의 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약하고 무기력한 자의 비폭력은 엉터리 비폭력이고, 이는 폭력보다 더 비도덕적인 것이다.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무기력함보다는 언제나 폭력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무기력함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또 폭력적인 사람은 비폭력적인 사람이 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폭력적인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3·1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적 시위가, 3·1운동이 비폭력·불복종운동이라는 점을 부정할 근거가

---

29 모한다스 K. 간디 저, 황필호 편역(1986), 앞의 글, 88쪽.

30 모한다스 K. 간디 저, 황필호 편역(1986), 위의 글.

될 수는 없다.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시위가 중심이 된 운동이었고, 발포와 같은 강압적인 진압방식에 의해 촉발된 폭력적 시위는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방어의 수단이었다. 3·1운동에 동반된 폭력성은 3·1운동이 비폭력·불복종운동이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리를 강화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V. 맺음말

---

3·1운동 과정에서 대략 37% 이상의 시위사건에 폭력이 동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3·1운동이 폭력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점에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인가? 평화적 운동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실증하지 않으면, 3·1운동이 ‘평화적 혁명’이었다는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일제 군경의 발포가 자행된 시위 가운데 약 85% 가까운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우선 이를 통해 발포와 폭력성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3·1운동이 기본적으로 비폭력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해명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3·1운동의 폭력시위 대부분은 일제 군경의 시위 진압 방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3·1운동의 시위를 1회시위와 연속시위로 나누어, 연속시위를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시위가 하루에 그치지 않고 이틀 이상 지속된 시위를 연속시위라고 명명하였는데, 비폭력·폭력시위가 전개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 연속시위는

1회시위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발발하고 있었으나, 시위 건수로는 전체 시위의 7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연속시위는 1회시위에 비해 폭력성과 발포의 비율도 높았다. 연속시위 과정에서는 발포가 중복적으로 자행된 경우가 많았고, 발포 이후 폭력적 시위가 빈발하였다. 연속시위 과정에 혼재된 발포와 폭력시위를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속시위를 분석하는 과정은 비폭력시위를 논의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연속시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연속시위 1일 차의 비폭력시위 상황 분석이었다. 이를 통하여 1일 차의 8할 정도는 비폭력시위였고, 나머지 시위도 대부분 비폭력시위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추론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연속시위에 대해 발포가 있었던 경우이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제1유형은 비폭력시위가 중심이었고 제2유형 역시 폭력시위가 많았으나 비폭력시위가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차원은 발포가 없었던 연속시위에 대한 것이다. 역시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제1유형은 전형적인 비폭력 시위였고, 제2유형은 약간의 폭력성이 동원된 비폭력시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3·1운동을 끌고 가는 근본적인 힘은 비폭력시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자행된 발포와 그에 대한 폭력시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간디는 비폭력적인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시위가 중심이 된 운동이었고, 발포와 같은 강압적인 진압방식에 의해 촉발된 폭력적 시위는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방어의 수단이었다.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비폭력·불복종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위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3·1운동 연구에서 거의 완전히 간과되어 온 측면은 바로 비타협적인 불복종 행동에 대한 것이다. 대개 평화운동에서의 불복종 행동은 “선에 대한 협력과 악에 대한 비협력”이라는 도덕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 조선인들은 불의의 법과 제도에 협력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일본의 지배를 거부하였다. 위의 미시분석의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불복종의 태도를 명백히 드러낼 수 있었다.<sup>31</sup> 기독교 『성서』의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악에 저항해야 한다는 언명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2</sup>

이처럼 비폭력과 불복종 행위를 가로지르며 아름답게 직조되었던 3·1운동은 ‘평화적 혁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sup>33</sup> 첫째, 3·1운동은 현실적인 운동이었다. 폭력시위의 경우에도 파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둘째, 3·1운동은 도덕적인 운동이었다. 권력의 말살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 아니라, 정의와 인도 나아가 상대방의 개조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셋째, 3·1운동은 창조적인 운동이었다. 비폭력·불복종운동은 분노를 건설적인 힘으로 전환한다. 또 3·1운동은 ‘문화를 위한 투쟁’이기도 했다.<sup>34</sup>

31 불복종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면장이나 면서기 등 관공리들이 사직하고 운동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권장하는 선언이나 운동도 상당수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관공리의 시위 참여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송순, 「경기도의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samil) 참조.

32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저, 박홍규 역,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들녘, 2016) 참조.

33 평화적 혁명의 구성 논리는 킹의 분류를 원용한 것이다. 마틴 루터 킹 저, 황필호 편역(1986), 앞의 책, 7-72쪽.

34 윤해동, 「동아시아 근대의 문화론적 전환과 3·1운동」, 『사회와 역사』 121집

3·1운동을 움직인 것은 창조적인 힘이었고, 또 '문화의 힘'이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은 이 운동을 스스로를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혁명적인 운동'이었고, '평화적인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가까스로 제국의 반열에 오른 '마지막 근대제국'이었다. 조선은 그 일본이 만든 '최후의 식민지'였다. 1차대전과 베르사이유조약을 거치면서 조선과 같은 '19세기형 식민지'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일본제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은 특히 3·1운동이 문화를 위한 투쟁이었고, 평화적인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의 운동은 문화 곧 조선의 특수성을 매개로 한, 조선과 일본의 개조운동이 되었다. 일본제국의 동요는 확장되어 가는 조선의 문화와 문화운동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

(2019), 7-37쪽 참조.

## 참고문헌

### 1. 1차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samil).  
「3·1독립선언서」(1919. 3. 1).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samil).  
조성환, 「창간사」, 『光復』 제1권 제1기, 1941. 2,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建國綱領」(1941. 11). 《신한민보》 1942년 11월 12일자,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大韓民國臨時憲章」(1944. 4. 22).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釋三一革命精神」, 『나라사랑』 21집, 1975, 146-150쪽.  
모한다스 K. 간디 저, 「비폭력은 강자의 무기이다」. 황필호 편역,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종로서적, 1986.  
마틴 루터 킹 저, 황필호 편역,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종로서적, 1986.

### 2. 단행본

-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들베개, 2019.  
김삼웅, 『3·1혁명과 임시정부』. 두레, 2019.  
김정인 외, 『국내 3·1운동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진호 외, 『국내 3·1운동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저, 박홍규 역,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들녘, 2016.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한국사연구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경인문화사, 2019.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 이레, 1999.  
황필호 편역,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종로서적, 1986.

### 3. 논문

- 김광재,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의 헌법사적 재해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9권 1호, 2019, 81-118쪽.
- 김선옥, 「한나 아렌트의 폭력개념」. 『인문학연구』 14호, 2008, 7-29쪽.
- \_\_\_\_\_, 「폭력과 평화」. 『동서사상』 15호, 2013, 71-82쪽.
- 김수용,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헌법학연구』 제25권 1호, 2019, 67-93쪽.
- 김영범, 「3·1운동에서의 폭력과 그 함의」.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4호(통권 153호), 2018, 67-104쪽.
- 김정환, 「폭력과 저항」. 『사회와 철학』 21집, 2011, 363-390쪽.
- 배성준,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박헌호·류준필 엮음,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와 3·1운동: 계속 학습되는 혁명」. 『창작과비평』 183호, 2019, 51-56쪽.
- \_\_\_\_\_, 「연동하는 동아시아의 1919: 혁명의 기점으로서의 3·1운동과 5·4운동」. 『개념과 소통』 23호, 2019, 5-37쪽.
- 윤해동, 「동아시아 근대의 문화론적 전환과 3·1운동」. 『사회와 역사』 121집, 2019, 7-37쪽.
- \_\_\_\_\_,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I: '폭력성'에 대한 거시적 접근」. 『사학연구』 113호, 2019, 503-545쪽.
- 이문영,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역사비평』 106호, 2014, 323-356쪽.
- 이송순, 「경기도의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samil).
- 이준식, 「'운동'인가 '혁명'인가: '3·1혁명'의 재인식」. 『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14, 42-56쪽.
- 정상우, 「3·1운동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학연구』 제25권 1호, 2019, 1-33쪽.
- 「좌담 3·1운동 100주년이 말하는 것들」.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11-76쪽.

## 국문초록

3·1운동의 폭력성과 관련하여, 우선 일제 군경의 발포가 자행된 시위 가운데 약 85% 정도의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포와 폭력성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3·1운동이 기본적으로 비폭력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해명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 3·1운동의 폭력시위 대부분은 일제 군경의 시위 진압 방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3·1운동 연구에서 그 동안 거의 완전히 간과되어 온 측면은 바로 비타협적인 불복종 행동에 대한 것이다. 대개 평화운동에서의 불복종 행동은 “선에 대한 협력과 악에 대한 비협력”이라는 도덕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 조선인들은 불의의 법과 제도에 협력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일본의 지배를 거부하였다. 폭력시위에 대한 미시분석의 과정에서 그런 불복종의 태도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시위는 비폭력시위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 이상 지속되는 연속시위의 경우, 폭력시위는 대부분 둘째 날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발포 등의 잔인한 진압 방식이 동원되거나 그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위가 폭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발포가 있는 경우에도 비폭력시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 3·1운동의 주요시위가 불복종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폭력과 불복종 행위를 가로지르며 아름답게 직조되었던 3·1운동은 ‘평화적 혁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첫째, 3·1운동은 실용적인 운동이었다. 폭력시위의 경우에도 파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둘째, 3·1운동은 도덕적인 운동이었다. 권력의 말살이 아니라, 상대방의 개조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셋째, 3·1운동은 창조적인 운동이었다. 비폭력·불복종운동은 분노를 건설적

인 힘으로 전환한다. 3·1운동은 '문화를 위한 투쟁'이기도 했다. 3·1운동의 힘은 이른바 '문화의 힘'이고, 창조적인 힘이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혁명적인 운동'이었고, '평화적인 혁명'이었다.

투고일 2020. 1. 7.

심사일 2020. 1. 22.

게재 확정일 2020. 2. 7.

주제어(keyword) 3·1운동(March 1st Movement), 폭력성(violence), 발포(shoot), 비폭력시위(non-violent street demonstrations), 폭력시위(violent street demonstrations), 비폭력(non-violence), 불복종(disobedience), 평화적 혁명(peaceful revolution)

## Abstracts

### 3·1 movement as a 'peaceful revolution': The condition of violence and nonviolence·disobedience

Yun, Hae-dong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approximately 85% of the street demonstrations the Japanese police and military suppressed by firing weapons erupted into violence. This figure suggests a high correlation between suppression by force and the consequent resort to violence on the part of the demonstrators. The fundamentally nonviolent nature of the March 1st Movement must be examined with this correlation in mind. Most of the violence during the movement was closely tied to how the Japanese authorities responded as the following points show: First, no Korean could have premeditated a violent protest at that time. The movement had only been discussed a month or so in advance, and there existed no organization powerful enough to plan an armed struggle. Second, most of the street demonstrations, having been organized in a matter of days, could only be carried out peacefully. Although some demonstrators carried tools, there was not a single report of anyone carrying a weapon such as a sword, scythe, or bamboo spear. Third, in those cases where violence did occur, it was almost always in response to the ruthless suppression undertaken by Japanese authorities. Hardly anyone attacked the Japanese out of sheer hatred or animosity. Koreans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from a sense of freedom, and the majority of the demonstrations did not devolve into acts of hostility.

Previous studies on the March 1st Movement have largely overlooked its nature as an uncompromising act of civil disobedience. In most peace movements, civil disobedience starts from the moral principle of "cooperation with good and non-cooperation with evil." By the same token, Koreans refused to cooperate with unjust laws and systems and thus rejected Japan's colonial rule. Although their belief in civil disobedience was not particularly made apparent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such as in the nationalist movement in India led by Mahatma Gandhi or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led by Martin Luther King Jr., a microanalysis of the "violent" aspect

of the street demonstrations clearly show elements of civil disobedience in the March 1st Movement: street demonstrations mostly started out as nonviolent; violence was used on the second day or later in those lasting for two days or more, indicating that it was used in response to or in anticipation of merciless suppression; and finally, many demonstrations continued to be nonviolent despite the armed response by Japanese authorities. It can thus hardly be denied that the major demonstration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e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eaceful civil disobedience.

As an extremely well-organized movement grounded in a spirit of nonviolence and peaceful civil disobedience, the March 1st Movement can be defined as a “peaceful revolution”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of all, it was a practical movement. Even the demonstrators who resorted to violence did not regard destruction itself as their objective. Second, it was a moralistic movement that aimed to reform the colonial rulers rather than obliterate their power. Third, it was a creative movement and a cultural struggle. A nonviolent disobedience movement turns anger into a constructive force. The movement was strengthened by its creativity and association with culture. The Koreans who took part in the movement turned it into an occasion for personal growth. In this respect, it was both a “revolutionary” movement and a peaceful revolution.